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2016. 1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목 차



I. 검토 배경 .....	1
II. P2P 대출시장 현황 .....	2
III.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	5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6
2.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방안 .....	9
IV. 향후 계획 .....	11

## I. 검토 배경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
  - \* 대출잔액(억원) : ('15.12) 235 → ('16.3) 724 → ('16.6) 1,129 → ('16.9) 2,087
-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업체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미국, 중국)
  - \* (美) 'Lending Club'은 '16.5월 2,200만 달러 규모의 부정대출을 중개
  - (中) 'e썬바오'는 '15.12월 허위정보로 500억 위안의 자금을 모집하여 유용
- ➔ '5차 금융개혁위원회'(7.1일)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결정(금융위·금감원 마련)
  - \* ① 현행 유지 ② 크라우드펀딩에 포섭, ③ 별도 법률제정, ④ 가이드라인 제정
- 現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의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
  - 최근 머니옥션 사례\* 등으로 인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
    - \*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지연
  - '투자한도 설정', '고객 투자금의 분리관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기타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금감원의 검사·감독 등을 통한 이행력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
    - \* 대부분의 P2P업체(플랫폼)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 →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님
-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TF팀장: 금융위 사무처장)하고 다각적인 논의 진행(7.22~10.27일)

## II. P2P 대출시장 현황

- ※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29개사 중 자료를 제출한 27개사 기준
- (대출잔액) '16.9월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2,087억원이며, '16.6월말(1,129억원) 대비 84.9% 증가
  - 대출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 담보대출이 940억원으로, 대출잔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45%)을 차지
    - \* 개인신용대출 375억원, 개인담보대출 499억원, 법인·사업자신용대출 273억원
  - 최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소규모 주택건설자금 등) 증가 때문으로 보이며, 한편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감소\*
    - \* 개인신용대출 비중: ('15년말) 48.8% → ('16.6월) 27.8% → ('16.9월) 17.9%
    - 법인담보대출 비중: ('15년말) 10.4% → ('16.6월) 41.7% → ('16.9월) 45.1%
- (투자 측면) '16.9월말 기준으로 투자자 수는 135,747명이며, '16.6월말(37,490명) 대비 262% 증가
  - 건당 투자액은 1.5백만원으로, '16.6월(3백만원) 대비 50% 감소
    - 급격한 투자자 증가 및 건당 투자액 감소는 '16.8월 협회에 신규가입한 '팝펀딩'(투자자: 66,488명, 건당 투자액: 0.2백만원)에 기인
      - \* 팝펀딩 제외시 투자자수는 69,259명('16.6월말 대비 84.7% 증가)이며, 건당 투자액은 2.9백만원 수준('16년 6월말과 유사)
- (차입 측면) '16.9월말 기준으로 차입자 수는 4,891명이며, '16.6월말(3,270명) 대비 49.6% 증가
  - 건당 대출금액은 42.7백만원으로, 법인·사업자 담보대출비중이 높아지면서 '16.6월말(34.5백만원) 대비 23.8% 증가

- (연체율) 1.3%(27.6억원)로 '16.6월말(0.5%)과 비교시 증가 추세
  - 대출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정 업체의 매출담보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것이 주된 이유
    - \* 특정 P2P업체의 매출담보대출에서 8.7억원의 연체(1개 업체) 발생
- (평균 차입금리)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1~15% 수준으로 차입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
  - \* 대출유형(개인vs.법인, 신용vs.담보 등)에 따라 차입금리 차이 발생
- 대출기간은 대략 1년(12개월)이며, 6개월~36개월 사이에 분포
- (평균 수익률)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차입금리(대출이자율)와 유사한 10~13% 수준에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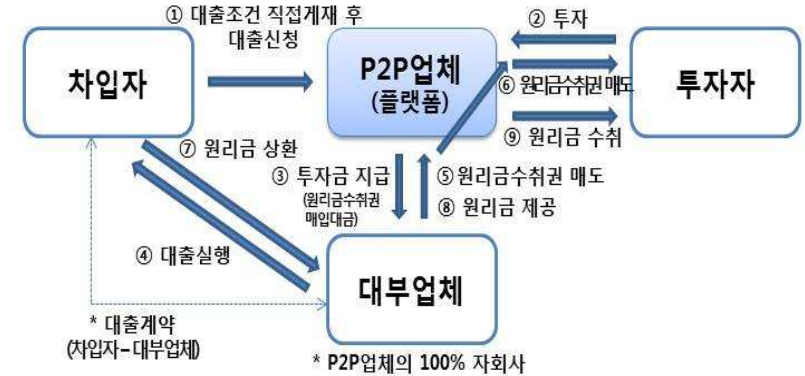
< P2P 대출시장 현황 >

(단위 : 억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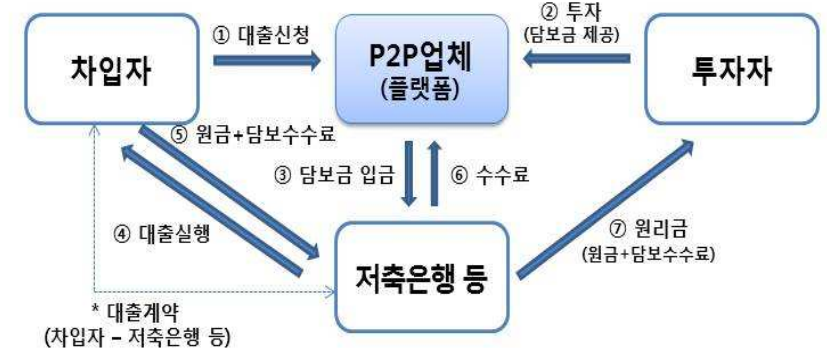
구 분	'15년말	'16.6월	'16.9월	'16.6월말 대비		
				증감	증감률	
대출잔액	개인신용대출	115	314	375	62	19.4
	개인담보대출	47	188	499	311	165.4
	법인·사업자 신용대출	49	157	273	166	73.9
	법인·사업자 담보대출	25	471	940	469	99.6
	합 계	235	1,129	2,087	958	84.9
누적 대출액	335	1,645	2,940	1,295	78.7	
투자자 수	8,334	37,490	135,747	98,257	262.1	
	건당 투자액(백만원)	2.8	3.0	1.5	(1.5)	(50.0)
차입자 수	1,031	3,270	4,891	1,621	49.6	
	건당 대출액(백만원)	22.9	34.5	42.7	8.2	23.8
연체율	0.1%	0.5%	1.3%	-	-	

참고 P2P 대출 구조

가. 원리금수취권매입형 (대부업체 연계)



나. 현금담보제공형 (은행·저축은행 연계)



### Ⅲ.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 【기본방향】

①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

① 투자 한도 설정,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 업체(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

② 투자자의 경우,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호체계를 마련

\* 투자한도 금액 설정시, ① 일반 개인, ② 일정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③ 전문투자자(개인)·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

③ P2P 업체(플랫폼)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투자·차입 결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사항은 플랫폼에 공시

④ 그 밖에 영업 또는 광고시 중립적 중개업체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②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등)를 통해 준수를 유도

① 감독당국은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연계 금융회사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

②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관계 법령(대부업법 시행령 등) 개정 등을 추진

### 1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1) 투자한도

□ (현황) P2P 업체 중 투자한도를 설정\*한 업체도 있지만, 다수의 업체는 별도 투자한도가 없는 상황(한국 P2P금융협회 가입업체 기준)

\* 업체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5~50%까지 1인 투자한도를 설정·운영

□ (규율방안)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간 1개 P2P 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및 총 누적금액 한도를 설정

\* P2P 대출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별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없으므로 업체별 관리로 한정

➔ 투자한도는 크라우드펀딩 체계를 따르되, 스타트업 주식투자과 대출의 리스크 차이, 현행 투자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① 개인투자자 :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5백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

②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설정

\* i)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ii)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③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 :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 i)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ii)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으로, iii)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2) 투자금의 분리 관리

- (현행) 대다수의 P2P 업체는 거래은행 등에 P2P 업체 명의의 투자금 관리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회사자금과 구분 관리
  - 현행 방식은 P2P 업체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예치되어 있어 업체의 도산·횡령 등의 문제에 대해 투자금 보호 미흡
- (규율방안)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P2P 업체의 자산과 고객자산을 명확히 분리·관리하는 장치 마련

- ①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 ② 은행, 저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토록 하여, P2P 업체가 투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 ③ P2P 업체가 파산 등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 3) 정보 공시

- (현행) P2P 업체별로, 업체의 영업실적에 대한 기준 및 투자자·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이 상이
  - P2P 업체, 투자위험, 차입자,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경우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
- (규율방안) 투자·차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
  - \*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P2P 업체 정보(대출잔액, 연체율 등)를 비교 공시할 예정

- ① (투자자 제공 정보)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제공
  -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 강화
  - \* 정보공시를 통해 P2P 업체 자율적으로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담보물 회수에상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
  - 아울러,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공시(매월)토록 하여 투자자의 업체선정에 도움
- ② (차입자 제공 정보)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하여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
  - \*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금리 상한규제의 우회 방지 가능
  - 또한, 차입자에게 상환방식,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4) 기타 준수사항

-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 \*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리스크 부담 없음)이나, 투자에 직접 참여하여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 [사례]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
- (광고시 준수사항)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원금보호', '확정수익' 등 투자자 등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금지

## 5) 타 법령과의 관계

- P2P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준수하며 영업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 '대부업법'(계약서 교부 등), '전자상거래법'(거래기록의 보존 등), '신용정보법'(추심 등) 등

## 2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방안

### 1) 연계 금융회사를 금감원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

□ P2P 업체(플랫폼)와 연계된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가 자산관리자(대출실행, 원리금분배, 추심 등)의 입장에서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

\* 대부분의 P2P업체(플랫폼)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 →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님

○ 연계 금융회사가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P2P 업체는 연계 금융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가이드라인에서 의무 부과

○ 금감원은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

□ 연계 금융회사가 소규모 대부업체\*(지자체 등록 대상)인 경우 현행 법령상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 자산 120억원 & 대출잔액 50억원 이상 등의 대부업체만 금융위 등록 대상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2P 업체(플랫폼)와 연계하는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금융당국의 감독 대상)

※ 연계 금융회사가 은행·저축은행인 경우 현재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가능

□ 시행령 개정까지 지자체에 등록하는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 금감원간 협업(행정지도, 행자부 협의)을 통해 감독 강화

○ 가이드라인 발표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을 전제로 금감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

\* P2P 협회를 활용(내부신고)하여 가이드라인 미준수 및 불법영업 감독

### 2)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관리 방안

(1)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 제한

□ (은행) 은행은 P2P 업체(플랫폼)로부터 수탁받은 대출실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

○ 부수업무 운영의 제한·시정(은행법 §27의2④) 또는 약관 심사(은행법 §52) 등을 통해 제한

□ (저축은행) 플랫폼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자금관리 업무는 금감원장 승인이 필요한 부대업무(저축은행법 §11①)

○ P2P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등은 승인받은 부대업무가 아니므로 저축은행에게 업무범위 위반으로 제재(저축은행법 §24①) 가능

(2) 대부업체 연계형 : 시정명령 부과

□ 대부업법상 금감원의 업무검사(§12⑦)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 부과 가능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명령 가능(§13①)

\* 대부업체 연계형의 경우 거의 모든 대부업체가 P2P 업체의 자회사(100%)이며, P2P 업체와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구분없이 사업을 영위

□ 아울러,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 규정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시행령 개정 필요)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플랫폼과 연계한 대부업체에 한해서 총자산한도(자기자본 10배) 규제를 완화할 계획

## IV. 향후 계획

### 1. 가이드라인 시행(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

-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히 시행하되,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 부여

\* 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 2. 지자체 협조 요청(가이드라인 시행 ~ 시행령 개정 前)

-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계 대부업체 중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지자체에 행정지도 요청(행자부·지자체 협업)
  - 행자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16.3월 법정 최고금리 행정지도시 금감원에서 지자체에 인력지원 등 실시

### 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16.12월 중 입법예고 목표)

- 연계 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을 가능한 조속히 완료하여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감독 권한 근거 마련

### 4. P2P 업체 실태조사 실시('16.11월~12월말)

-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P2P 업체를 포함하여 P2P 대출시장 전반('16.9월 기준 약 80개 추정)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하고 있는 선도 업체들이 P2P 협회에 대부분 가입(29개)해 있어 시장파악을 위해 협회의 통계 및 자료를 활용